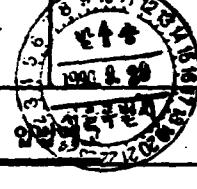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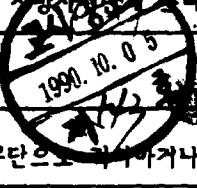


문서번호 문서별호	전통 30050- 내선번호 : 731-6373	기안용지	서명부 특별회급
보증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사장	
수정처 보증기간	-	2425 <del>결재</del>	
시행일자	90.9.11	2425 <del>결재</del>	
보 조 기 관	시장	협 조 기 관	군수·군장
기 관	도로국장	기획관리실장	2425 <del>결재</del>
부 관	건설행정국장	법무담당관	2425 <del>결재</del>
기 관	시설관리처장 경총식		인
경 유 수 신 항 조	각안참조 -	발 신 명 의	시장
제 목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 정수조례(안) <del>경정통보 및</del> 		
(제1안) 내부결재			
<p>1. 내무부 지역 30500-7899(90.9.11)호 <del>경정통보 및</del>  <del>조례준칙</del>      계정통보와 관련입니다.</p> <p>2. 공공시설인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무단으로 차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므로 도로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자에게 행정질서벌도서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벌침과 같이 계정시행코자 하는바, 본 조례(안)의 확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일법예고)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수렴하여 본조례(안) 마련에 반영토록 합니다.</p>			

- 1505-25(2-1) 9(1)집  
85. 9. 9. 충안

190mm x 260mm 9) 쇠용지 2kg 60g/m<sup>2</sup>  
No 40-41 1995. 4. 8.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90.9.<sup>10.5</sup> ~ 90.10.24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보 게재공고

다. 공고내용 : 별첨

첨부 : 1. 공고(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정수조례(안) 1부

3. 내구부 조례 준칙 1부 끝.

( 제 2 안 )

수신 공보관

발신 도로국장

제목 공고문 게재의뢰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을

시보 및 서울시보에 게재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문안 : 공고안

나.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보게재

다. 게재일자 : 90.9.<sup>10.5</sup>

첨부 : 공고안 1부 끝.

90

( 제 3 안 )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목 제1안과 같은건

제목 제1안과 같은건

1. 서울특별시 공고 제142호 (90.10.1)로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공고안

및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송부하니 관련의견을  
90.10.31 까지 회시하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부 끝.

수신처 ; 서구 (1-22, 건설관리과장), 행정과장, 세정과장, 도로계획과장  
도로시설과장, 주차계획담당관, 가로정비추진반장

(제4안) P62

수신 법무담당관

발신 건설행정과장

제목 입법예고안 사본 송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143호 (90.10.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입법예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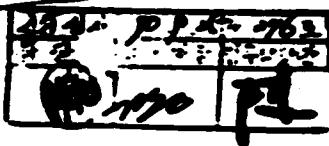
예고안 사본을 송부합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부 끝.

91

3-3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47호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0.

서울특별시장

1. 조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2. 제정의 취지 :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도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엄정한 도로질서 확립

3. 주요내용

<과태료부과대상>



-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수리, 용접등 작업을 하는 행위
- 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도로본체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과대도 부과이준〉 - 20만원이하

부단 면적 단위	과 대 도
3m <sup>2</sup> 미만	50,000원
3m <sup>2</sup> ~ 7m <sup>2</sup> 미만	100,000원
7m <sup>2</sup> ~ 10m <sup>2</sup> 미만	150,000원
10m <sup>2</sup> 이상	200,000원

4. 의견제출 : 이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 10. .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6점짜른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항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5. 조례(안)의 전문동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731-6373)  
 도 직접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조에서 도로타입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동법 제10조에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이  
가를 받지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 작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과태료의 산정)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제5조 (부과징수)**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입 통지서를 발부 함으로써 행한다.

② 과태료는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관한의 위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1]

. 도로무단점용과 과태료 부과기준표

무 단 점 용 면 적	과 태 료
3m <sup>2</sup> 미만	50,000원
3m <sup>2</sup> 이상 - 7m <sup>2</sup> 미만	100,000원
7m <sup>2</sup> " - 10m <sup>2</sup> "	150,000원
10m <sup>2</sup> 이상	200,000원



제 13회장						
국 세 흐 날 입 고 치 서 영 날 입 할 응 치 서						
( )						
남 부 험 응 치 서						
( )						
정 수 증						
( )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관) 세외수입		(항) 일시적 세외수입				
(세항) 잡수입		(목) 과태료				
남	위반장소	구	로	가	번지	호
부	주 소	구	로	가	번지	호
과	상 명					과
남부금액			임금	현정		
			(부)	( )		
위반행위 : 도로법 제40조, 출범시행령 제24조, 도로법 제47조 부과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납부기한 : 낸 월 일						
위반행위 : 도로법 제40조, 출범시행령 제24조, 도로법 제47조 부과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납부기한 : 낸 월 일						
19 년 월 일						
시 공금수납대행업 (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관리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관리국						

## 도로 주 단정을 자과 대표 부과장 수 대장

(별지 2호서식)

## 도로 주 단정을 자과 대표 부과장 수 대장

구

번호	위반 (도로주단정용) 내용			처벌일자 등록일자	국세로 수납소인 수납년월일	국세로 납부 의무자		
	위치	점용형태	점용면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地方自治法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限制 등) ①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例制로 정한다.

② 例制 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要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要한 領의 5倍이내의 遺意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遺意料에 처하는 規定을 例制로 정할 수 있다. ✓

③ 第 2項의 遺意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駐用한다.

第131條 (使用料등의 試課·徵收, 吻議申請) ①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公주한 방법으로 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

②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의한다.

③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吻議가 있는 者는 그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吻議申請할 수 있다.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3項의 吻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이를 決定·통보하여야 한다.

⑤ 吻議를 申請한 者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 4項의 期間내에 決定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期間이 종료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또는 그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관할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⑥ 第 3項 대지 第 5項의 規定에 의한 吻議申請의 方法과 節次등에 관하여는 地方稅法 第58條의 規定을 駐用한다.

第132條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支出할 職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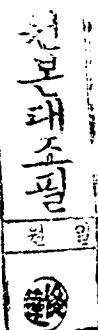
의



##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정(안)

### ○ 계정사유

- 도로법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게는 그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도로법 제80조의 2), 또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법 제82조)
- 도로무단점용은 사례가 많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만 부과하고 있는바
- 부당이득금 액수가 적고 부당이득금 납부를 행위자들이 도로점용허가로 오인하여 도로무단점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거나 축소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 도로무단 점용자에게는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여 금전적, 재재를 가함으로써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것 보다는 더 큰 부담을 주어 신규무단점용을 극복시키고 점차 그 사례를 축소시키는데 있음.



###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 작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내부

지역 30500 - 2840 (731 - 2250)

부

1990. 9. 11.

수신 서울특별시장

(영구)

참조 도로국장

제목 지방자치단체 조례준칙 개정통보

1. 당부에서는 노상적치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연속되는 악성 고질적인 행위를 완전제거하기 위해서는 현행도로법상 부당이득금 징수나 형사 벌금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므로, 행정벌도서의 과태료를 강수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온보  
대조  
필

2. 별첨과 같이 조례준칙을 개정 척결시와 도에 시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일정부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내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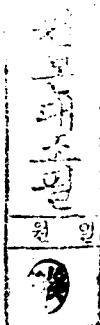
의

##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준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 2조 및 제 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3조·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조(과태료)**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에 한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 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 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辯護士 郭 倉 忱 法 律 事 務 所

한국 대법원 1990. 1. 1. 제 1000 호 판결  
전화: TEL 02-734-5756, 5856 · FAX: (02) 734-5756  
주소: TEL 02-734-5756, 5856 · FAX: (02) 734-5756

受 信: 서울특별시장

1990. 7.

電 送: 법무담당관, 건설행정국장

題 目: 往 往 是 犯 罪

귀하께서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과정조례 개정에 따른 주문을 하신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답합니다.

1.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이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및 무단점용기간에 따른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부과징수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는 규정(82조, 80조의 2)이 있어 과태료 이상의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은 있으나 질서법이 할 수 있는 과태료로 규정이나 등 계제를 조례에 위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을 모범으로 하여 조례로서 과태료 과정조례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과정조례안 검토 수정안:

가) 제2조 2항: 도로무단점용이하 항은 제3조 제1항 소정 과태료 부과징수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제3조 1항 본문: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상에서 무단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 부과 이후에도 그 행위가 계속 될 때에는 1일 단위로 행위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위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한국  
법  
률  
월  
간  
지

# 律師 郭 倉 旭 法律事務所

（三）在本會會場上，請各代表團就其所代表的國家，提出一個方案，由該國政府公佈，並請各代表團就其方案，提出一個報告，由該國政府公佈。

## 愛 信：

二二

卷之三

할 수 있다. .

1장 4호: 기타 도로상에서 일반의 교통의 저해하는 행위를 하자

제1항: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 제4조: 이조례에 의한 구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  
당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국장 2-  
국장 1-  
국장 3-



법률자문의뢰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꽈 쟁우 변호사 귀하

776-5151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1990. 7 . 12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3

1. 의뢰안건

도로 무단 정유차에 대한 과태료 과정조례 재정에 따른 청문



2. 안건보고자

소 속 : 전설행정과

직 위 : 주무관

성 명 : 김철우

(인)



분류기호 문서번호	간접30050-667	기안용지 (전화: 391-6373)		시행상 특별허용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간접행정과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2. 6 20	<i>20/</i>		
보 조 자		협 조 기 관		문서통제
관	건설관리과장 <i>이기현</i>			
기안책임자	경 풍식	발송인		
경 유 수 신 참 조	별우암장관	발 신 명 의	건설행정과장	
제목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자문 요청			
공공도로의 무단정용 사용에 대한 조율적 재해를 위해 별첨파일이 "도로 무단 정유자에 대한 파태로 파장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바,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와 경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부	정부: 1. 도로무단 정유자에 대한 파태로 파장			
천일	조례 제정경로 1부			
	2. 조례 (안) 1부. 106			
	3. 관련 법조. 4는 몇 도로정용료징수조례 각부			

1505-25(2-1) 일(1)갑

85. 9. 9. 승인 "내가야며 종이 한장 놀어나는 나라 살리!"

15

190mm × 260mm 인쇄용지 2급 60g/m<sup>2</sup>

가 40-41 1990. 2. 10.

##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로 제정 검토

###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현행 도로법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한자에게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제80조의 2)
- 동법 제82조에 따라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일선 업무폭주, 전과자 양산 우려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자에게는 주로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바
- 그 액수가 미미하여 계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공공도로의 무단 점유 사용을 근절시키므로써 도로분배의 기능을 회복, 유지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경제적 계재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

### 2.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현행 도로법상에는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기존의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130조의 규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나 이와같은 경우 현행법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별첨과같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정조례(안)

(조례 제 90. . .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유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 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무단점용 이타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 임의의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거나 또는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등 도로 본래의 목적 (일반의 교통에 공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한자.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한자.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작업 행위를 한자.
4. 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관련의의임)**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관한 관한은 구청장에게위임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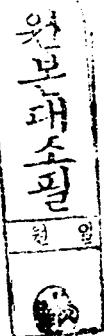
###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표

/1

- 첨부 ; 1.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정 조례(안) 1부  
2. 관련 법규 사본 각 1부 끝.  
3. 연행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1부



(별도)

도로 주 단점 용 자 과 벽 토 부 과 기 준 표

무 단점 용 면적	과 벽 토 (원)	비 고
1. 10m <sup>2</sup> 미만	100,000	
2. 10m <sup>2</sup> 이상 -15m <sup>2</sup> 미만	150,000	
3. 15m <sup>2</sup> 이상 -20m <sup>2</sup> "	200,000	
4. 20m <sup>2</sup> " -25m <sup>2</sup> "	250,000	
5. 25m <sup>2</sup> " -30m <sup>2</sup> "	300,000	
6. 30m <sup>2</sup> " -35m <sup>2</sup> "	350,000	
7. 35m <sup>2</sup> " -40m <sup>2</sup> "	400,000	
8. 40m <sup>2</sup> 이상	500,000	

도로  
주 단  
점 용  
면적



**第80條의2 (不當利得金의徵收)** 第40條의規定에 의한道路占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道路을占用한者에 대하여는 그占用期間에 대한占用料相當額을 不當利得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徵收方法은 道路占用料徵收의 方에 의한다.

[本條新設 76·12·31 法2989]

## 第9章 罰 則

**第81條 (罰則)** 正當한事由없이 道路 高速國道を除外한다 를損傷하여 道路의效用을  
害하게하거나 交通의危險을發生하게 한者は 10年以下の懲役 또는 50萬원以下の罰金에  
처한다. <改正 66·8·3, 70·8·10>

**第82條 (同前)** 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者는 1년以下の懲役 또는 20萬원以下の罰金에  
처한다. <改正 66·8·3, 68·12·31, 70·8·10>

1. 第34條의規定에違反하여 許可없이 道路工事を施行한者
2. 不正한手段으로 이法 또는 이法에 依하여 發하는命令에 依한許可를 받은者
3. 第36條의規定에違反하여 許可없이通行料를 徵收한者
4. 第40條의規定에违反하여 許可없이道路를 占用한者
5. 第47條의規定에违反한者
6. 正當한事由없이 第49條의規定에 依한管理廳의處分에抗拒하거나 이를妨害한者
7. 第50條第4項(第54條의2第6項으로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項  
(第54條의2第6項으로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违反한者
8. 第51條第3項의規定에违反한者
9. 第54條의4第1項의規定에违反하여 自動車專用道路에 自動車를 사용하는 이  
의의 方法으로通行하거나出入한者
10. 第54條의4第3項의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에违反한者
11. 第54條의6第2項의規定에 의한 허가없이 自動車專用道路에 道路 또는 交通  
用의 私道·通路 기타의施設을連結한者

大  
正  
規  
定  
第  
九  
章  
罰  
則  
第  
八  
十  
條  
의  
二

**第83條 (同前)** 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者는 6月以下の懲役 또는 5萬원以下の罰金에  
처한다. <改正 70·8·10>

1. 正當한事由없이 第48條의規定에 依한管理廳의處分이나 行爲에抗拒하거나 이를妨  
害한者
2. 第53條의規定에 依한禁止 및 제한 제限에違反하는 諸款을施行한者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1976. 4. 15 규칙 제 1580 호

개정 1979. 2. 26 규칙 제 1793 호

1982. 8. 9 규칙 제 1990 호

1989. 2. 18 규칙 제 2269 호

제 1 조 ( 목적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함)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 점용료 징수기간 )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 3 조 ( 점용허가의 신청 )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평면도 1부(구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1부(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 등을 필요로 할때는 그 인가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 1부

② 점용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경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 4 조 ( 경합신청의 처리 ) 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

되었을 때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용목적이 다른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

2. 점용면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 1순위 : 당해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자

○ 제 2순위 :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기타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용자

○ 제 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따른 자.

(2)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8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회 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810 8811 8812 8813 8814 8815 8816 8817 8818 8819 8820 8821 8822 8823 8824 8825 8826 8827 8828 8829 8830 8831 8832 8833 8834 8835 8836 8837 8838 8839 8840 8841 8842 8843 8844 8845 8846 8847 8848 8849 8850 8851 8852 8853 8854 8855 8856 8857 8858 8859 8860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8867 8868 8869 8870 8871 8872 8873 8874 8875 8876 8877 8878 8879 8880 8881 8882 8883 8884 8885 8886 8887 8888 8889 88810 88811 88812 88813 88814 88815 88816 88817 88818 88819 88820 88821 88822 88823 88824 88825 88826 88827 88828 88829 88830 88831 88832 88833 88834 88835 88836 88837 88838 88839 88840 88841 88842 88843 88844 88845 88846 88847 88848 88849 88850 88851 88852 88853 88854 88855 88856 88857 88858 88859 88860 88861 88862 88863 88864 88865 88866 88867 88868 88869 88870 88871 88872 88873 88874 88875 88876 88877 88878 88879 88880 88881 88882 88883 88884 88885 88886 88887 88888 88889 888810 888811 888812 888813 888814 888815 888816 888817 888818 888819 888820 888821 888822 888823 888824 888825 888826 888827 888828 888829 888830 888831 888832 888833 888834 888835 888836 888837 888838 888839 888840 888841 888842 888843 888844 888845 888846 888847 888848 888849 888850 888851 888852 888853 888854 888855 888856 888857 888858 888859 888860 888861 888862 888863 888864 888865 888866 888867 888868 888869 888870 888871 888872 888873 888874 888875 888876 888877 888878 888879 888880 888881 888882 888883 888884 888885 888886 888887 888888 888889 8888810 8888811 8888812 8888813 8888814 8888815 8888816 8888817 8888818 8888819 8888820 8888821 8888822 8888823 8888824 8888825 8888826 8888827 8888828 8888829 8888830 8888831 8888832 8888833 8888834 8888835 8888836 8888837 8888838 8888839 8888840 8888841 8888842 8888843 8888844 8888845 8888846 8888847 8888848 8888849 8888850 8888851 8888852 8888853 8888854 8888855 8888856 8888857 8888858 8888859 8888860 8888861 8888862 8888863 8888864 8888865 8888866 8888867 8888868 8888869 8888870 8888871 8888872 8888873 8888874 8888875 8888876 8888877 8888878 8888879 8888880 8888881 8888882 8888883 8888884 8888885 8888886 8888887 8888888 8888889 88888810 88888811 88888812 88888813 88888814 88888815 88888816 88888817 88888818 88888819 88888820 88888821 88888822 88888823 88888824 88888825 88888826 88888827 88888828 <u

고정판 점용률전증- 도로유지관리상 지정이 없는 점용

①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기간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년한 ✓

2. 필요에 따라 시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년한

3. 기타 공공사업등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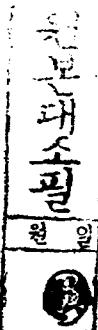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경신할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을 적용 처리한다.

제 7조 (점용표시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점용기간중 점용구역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기간
3. 점용장소
4. 점용면적
5. 허가년월일 및 번호
6. 점용자의 주소 성명

#### 제 8조 삭제

제 9조 (대리인) 신청자가 당시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점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시 구역내에 거주하는 적당한 대리인을 선정하고 연서로써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주인 허가할 수 있다.

제 12 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3 조 (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 4 조에 의한 "기타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 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시장
3. 기타사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 14 조 (점용료의 분납) 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점용료의 불반환) 도로법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조치에 의하여 점용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정수한 점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6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 1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76. 4. 15 규칙 제 1580 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79. 2. 26 규칙 제 1793 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82. 8. 9 규칙 제 1990 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89. 2. 18 규칙 제 2269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